## 공 시 송 달 공 고

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10-3957(2010.4.12.)호로 정비구역 결정고시, 의정부시고시 제2013-138(2013.9.11.)호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8조제1항에 따라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장암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등소유자중 소재불명 등 거주지 파악이 불가하여 협의보상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(상속대상자 포함)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6년 12월 29일

## 의 정 부 시 장

- 1. 사 업 명: 장암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2. 사업시행구역 위치 및 면적: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4-2번지 일원(47,447.00㎡)
- 3. 사업시행자 : 장암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최종환)(경기도 의정부시 회룡로192번길 38, 3층 / ☎031-837-4366)
- 4. 공고기간: 2016.12.29. ~ 2017.1.13.(16일간)
- 5. 송달대상 및 내용: 첨부
- 6. 보상협의방법 및 대상자 권리내역

협의기간	2016. 10. 19. ~ 2016. 11. 25.
협의장소	장암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사무실(031-837-4366)
보상시기, 방법·절차	협의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예금통장으로 보상금 현금입금
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	매도용인감증명서, 인감도장, 통장사본,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사항기재포함), 등기권권증, 소유권이외의 권리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해지하거나 권리설정권자의 해지동의서류 등(영업보상자·무허가건물소유자·미등기건물소유자는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, 통장사본)
보상대상 권리내역	별지 첨부